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28
----------	-----

2022. 3. 16.(목)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최정훈 의원 등 10인

나. 제출일자 : 2023년 3월 7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3월 9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3월 16일

-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정훈 의원)

가. 제안사유

-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입기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도지사가 도내 시·군, 교육행정기관 등에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음(안 제5조).
- 한복의 날 지정 및 고유명절 등 주요행사 시 한복입기 활성화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한복을 입은 사람이 도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한복 산업 육성 및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서정호)

- 본 조례안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입기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옷을 보다 자주 입을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인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는 일응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을 거친바 절차상으로도 타당함.
- 본 조례안의 내용은 도지사의 한복입기 활성화 시책의 개발·추진 책무를 부여하고, 도내 시·군, 교육행정기관, 민간기업 등에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한복의 날 지정 및 고유명절 등의 주요행사에 한복입기를 활성화하고, 한복을 입은 사람이 도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한복 산업 육성 및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항의 정책적 실현을 통해 한복이라는 전통문화 자원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한복입기 문화 확산과 한복구매 증가로 이어져 한복업계 진흥 등의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함.

- 다만,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한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전통문화로 계승하려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고유명절 등 주요행사 시 적극적인 한복입기 활성화 실천과 입장료 및 관람료 감면 대상 공공시설의 범위와 감면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실 있는 집행부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입기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즐겨 입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입은 전통복식을 말한다.
2.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계절적·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 온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을 포함한다.
3. “공공시설”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 관련 시설로서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말한다.
4. “입장료”란 공공시설에 입장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료”란 공공시설 내의 관람을 위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리의 전통의상인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복입기 활성화 시책은 건전한 한복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한복입기 권장) 도지사는 도내 시·군, 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제6조(한복의 날 지정) 도지사는 한복입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고유명절 등 한복입기) ① 도지사는 고유명절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 등 주요행사에 도민이 한복을 더 많이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한복입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한복 입은 자의 우대) ① 도지사는 한복을 입은 사람이 도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및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와 입장료 및 관람료의 감면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한복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한복입기 활성화 문화행사 또는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한복입기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 문화예술진흥법

-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육성시책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문화기본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3. 문화예술의 진흥
4. 문화산업의 진흥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6. 문화복지의 증진

7. 여가문화의 활성화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9. 국제 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제10조(문화 인력의 양성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제1호

○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